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23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서삼석·장종태·허성무

김동아 • 박용갑 • 김영진

윤준병 • 문대림 • 신정훈

이병진 • 박수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촌 경제의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기 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제2항, 제105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2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월 1일부터 2031 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2년 1월 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세 과세특례)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u>2025년 12월 31일</u> 이전	<u>2030년 12월 31일</u>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	
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	
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	
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 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 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 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 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 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② ~ ⑥ (생 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지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 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u>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u> <u>12월 31일</u>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5
- 2. <u>2027년 1월 1일</u>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u>203</u>
0년 12월 31일
1.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
<u>12월 31일</u>
12월 31일
<u>12월 31일</u>
12월 31일 2. <u>2032년 1월 1일</u>
12월 31일 2. 2032년 1월 1일 세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12월 31일 2. 2032년 1월 1일 세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12월 31일 2. 2032년 1월 1일 세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12월 31일 2. 2032년 1월 1일 세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12월 31일 2. 2032년 1월 1일 세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제

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u>2030년</u>
12월 31일
<u>2</u>
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
월 31일
② 2032년 1월 1일
1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 (1)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u>2030년 1</u>
2월 31일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